

소방생활법률-2

##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 등

※ 소방생활법률에서는 일상 또는 업무 중에 자주 접하게 되는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 관련 판례 등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피난시설 및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법령상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보일러, 난로, 가스·전기시설 등 불을 사용하는 설비 또는 기구를 사용하거나 고무, 면화 등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할 경우에는 법령상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수행

#### (1)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수행 의무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다음과 같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6항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피난 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2)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 3)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 4)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

#### (2) 위반 시 제재

: 위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3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바목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7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개별기준표의 제7호).

## ◇ 불을 사용하는 설비와 특수가연물 등의 취급 관리

### (1)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 의무

: 소방대상물(다중이용업소를 포함)의 관계인이 보일러<sup>별지참조</sup>,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등 불을 사용하는 설비 또는 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소방기본법」 제15조제1항 및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것 외에 불을 사용하는 설비 또는 기구의 세부관리기준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해당 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소방정보센터(<http://www.kf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의무

: 소방대상물(다중이용업소를 포함)의 관계인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인 고무류·면화류·석탄 및 목탄 등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품명별 수량 이상의 가연물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저장·취급해야 합니다(「소방기본법」 제15조제2항 및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7조).

1)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최대수량 및 화기 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할 것

2) 다음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할 것. 다만, 석탄·목탄류를 발전(發電)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가. 품명별로 구분해서 쌓을 것

나. 쌓는 높이는 1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쌓는 높이를 15미터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200제곱미터(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다.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3) 위반 시 제재

1)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반하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기본법」 제56조제1항제2호 및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

- 위반행위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200만원
  - 위반행위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외의 경우: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위반 시 150만원, 4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
- 2)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하면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기본법」 제56조제1항제2호 및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3 제2호다목).

### ◇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 (1)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의무  
: 일부 다중이용업의 영업주는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시에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 (2) 피난안내도의 비치 대상  
: 피난안내도를 비치해야 하는 대상은 모든 다중이용업소입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지 않아도 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 1)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2) 영업장 내 구획된 실(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 확인이 가능한 경우
- (3)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대상  
: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입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
-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 2)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
  -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다만,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다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이 설치된 책상마다 피난안내도를 비치한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5) 고시원업·전화방업·수면방업·콜라텍업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

(4) 피난안내도의 비치 위치

: 피난안내도는 다음의 위치에 비치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

- 1)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 2) 구획된 실(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5)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시간

: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시간은 영업장의 내부구조 등을 고려해서 정하되, 상영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4호).

- 1)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매 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 시작 전
- 2) 노래연습장업 등 그 밖의 영업: 노래방 기기(機器)가 처음 작동 될 때

(6)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의 내용

: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5호).

- 1)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 2)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 3)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 4) 피난 및 대처방법

(7) 위반 시 제재

: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5호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개별기준표의 제5호).

◇ 관련판례

판결표시	대전지법 2007. 5. 2. 선고 2006고정1527 판결 소방기본법위반: 확정
판시사항	<p>[1] 소방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p> <p>[2]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진압조치를 이행하였지만 화재진압에 성공하지 못하여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소방기본법 제54조 제2호, 제20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p> <p>[3] 소방기본법 제20조에 정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점유자’의 의미</p>
판결요지	<p>[1] 소방기본법 제54조 제2호는 ‘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방기본법 제20조에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선택적으로 인명구출조치 또는 화재진압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더하여 위 법규정의 문리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보일뿐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를 처벌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소방기본법상의 조치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p> <p>[2]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 당시 자신의 판단에 따라 화재진압조치를 이행하였다면, 비록 화재진압조치에 성공하지 못하였고 또 그와 같은 과정에서 더 높은 가치의 의무인 인명구출조치를 이행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건물 안에 남아 있던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별론으로 하고, 소방기본법 제54조 제2호, 제20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p> <p>[3] 소방기본법 제20조는 소방대상물의 관리자·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인명구출조치 또는 화재진압조치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소방기본법의 목적 및 위 규정이 위급한 재해의 발생원인과 관련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관계인에 대하여 인명구출조치 또는 화재 진압조치를 부과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항 소정의 점유자는 소방대상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소방대상물을 보존, 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p>

◇ 참고자료

**보일러의 화재위험성과 안전대책**

**필요성** :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화기의 사용에 있어서 보일러 설비의 설치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개선대책** :

가. 가스온수기나 가스보일러는 다음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합니다.

- (1) 주위에는 가연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가 아니고 조작·연소·확인 및 점검수리에 필요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여야합니다.
- (2) 가스보일러는 전용보일러실(보일러실 안의 가스가 거실로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서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한 것)에 설치하여야합니다.(다음의 경우에는 제외)

(가) 밀폐식 보일러

(나) 가스보일러를 옥외에 설치한 경우

(다) 전용 급기통을 부착시키는 구조로 검사에 합격한 강제배기식 보일러

- (3) 밀폐식 보일러는 방, 거실 그밖에 사람이 거처하는 곳과 목욕탕, 샤워장 그밖에 환기가 잘 되지 않아 보일러의 배기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사람이 질식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아야합니다.(다음의 경우에는 제외)

(가) 보일러와 배기통의 접합을 나사식 또는 플랜지식 등으로 하여 배기통이 보일러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밀폐식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나) 막을 수 없는 구조의 환기구가 외기와 직접 통하도록 설치되어 있고, 그 환기구의 크기가 바닥면적 1㎡마다 300㎡의 비율로 계산한 면적(철망 등을 부착할 때는 철망이 차지하는 면적을 뺀 면적)이상인 곳에 밀폐식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 (4) 전용보일러실에는 부압(대기압보다 낮은 압력) 형성의 원인이 되는 환기팬을 설치해서는 안되며, 사람이 거주하는 거실·주방 등과 통기될 수 있는 가스렌지 배기덕트(후드) 등을 설치하지 말아야합니다.

- (5) 가스보일러는 지하실 또는 반지하실에 설치하지 말아야합니다.(단, 밀폐식 보일러 및 급배기시설을 갖춘 전용보일러실에 설치된 반밀폐식 보일러의 경우 예외)

나. 개방형 연소기를 설치한 실에는 환풍기 또는 환기구를 설치하여야합니다.

다. 반밀폐형 연소기는 급기구 및 배기통을 설치하여야합니다.

라. 배기통의 재료는 금속·석면 그 밖에 불연성재료로 하여야합니다.

마. 배기통이 가연성물질로 된 벽 또는 천장 등을 통과하면 금속 외의 불연성 재료로 단열조치를 하여야합니다.

바. 자연배기식 반밀폐형 및 밀폐형 연소기의 배기통 끝은 배기가 방해되지 아니 하는 구조이고, 장애물 또는 외기의 흐름에 의해 배기가 방해받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합니다.

사. 밀폐형 연소기는 급기통·배기통과 벽과의 사이에 배기가스가 실내로 들어 올 수 없도록 밀폐하여야합니다.

아. 배기팬이 있는 밀폐형 또는 반밀폐형의 연소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배기팬의 배기가스와 접촉하는 부분의 재료를 불연성재료로 하여야합니다.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

◆ **법적근거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 관련 별표1**

- (1) 가연성 벽·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또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석면 등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 (2) 경유·등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켜야한다.
  - 가. 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와 수평거리 1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할 것
  - 나. 연료탱크에는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탱크로부터 0.5m 이내에 설치할 것
  - 다. 연료탱크 또는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라. 사용이 허용된 연료 외의 것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마. 연료탱크에는 불연재료로 된 받침대를 설치하여 연료탱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 (3)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 가.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가연성 가스가 머무르지 않도록 할 것
  - 나.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으로 할 것
  - 다. 화재 등 긴급 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용기 등으로부터 0.5m 이내에 설치할 것
  - 라.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 (4) 보일러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0.6m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 (5) 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 **묻고 답하기**

Q : 노래방의 경우 피난안내 영상물을 언제 상영해야 하나요?

A : 노래연습장업 영업의 경우 노래방 기기(機器)가 처음 작동 될 때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해야 합니다.

◇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의무**

☞ 다중이용업의 영업주는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시에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해야 합니다.